

국어문화원 규정

(제정 2022. 12. 14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국어문화원(이하 “국어문화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속 및 소재지) ① 국어문화원은 본교 산학협력단에 둔다. <개정 2023.9.2.>

② 삭 제 <2023.9.2.>

제3조(사업) 국어문화원은 올바른 국어 문화생활의 선도를 위한 제반 연구, 교육, 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국어문화원 운영 사업 및 외부 유관 기관과의 공동 사업 등
2. 한국어문학 관련 제반 학문 영역의 데이터 수집, 정리, 보급 등
3.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제반 활동 등
4. 연구서 및 조사 보고서 등의 출판 등
5. 그 밖에 국어문화원의 목적에 부합되거나 관계된 사업 등

제2장 조직 및 기구

제4조(원장) ① 국어문화원에 원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 부원장을 둘 수 있다.

② 원장은 본교 국어 관련 전공 교원 중에서 사범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원장은 국어문화원 업무를 총괄하며,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조직) 국어문화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총괄팀, 기획운영팀, 연구교육팀, 홍보팀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연구원 등) 국어문화원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연구교수, 특별연구원, 연구조원을 둘 수 있다.

① 삭 제 <2023.9.2.>

② 삭 제 <2023.9.2.>

③ 삭 제 <2023.9.2.>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국어문화원의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어문화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제8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국어문화원 기본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
2. 국어문화원 조직 설치, 폐지 및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규정의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국어문화원 운영에 관한 사항

- 제9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는 회의록에 참석위원 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4장 재정

제10(재정) 국어문화원의 재정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제반 연구비, 사업비 등으로 충당한다.

제11조(예·결산) 국어문화원의 예산 및 결산은 산학협력단 회계연도에 따른다. 다만,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등 외부자금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이 정하는 회계운영지침을 따른다. <개정 2023.9.2.>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9.2.>

이 규정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